



제 439국회 (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포함 의무화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19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3. 3.
3. 회 부 일 : 2026.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재정지원 전략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인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고등교육은 전문지식과 고급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며, 연구개발과 학문적 성과 창출을 통해 신산업 형성과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OECD 주요국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가 고등교육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¹⁾

- 독일의 경우 2019년 ‘미래의 학문과 교육을 위한 협약(Zukunftsvertrag Studium und Lehre stärken)’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인프라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2023년 기준 약 19억 4천만 유로(한화 약 3조 1,400억원, 1유로≈1,620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학의 장기적·안정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구 주도로 2022년부터 약 10조 엔(한화 약 92조원, 1엔≈9.2원)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창출과 혁신인재 양성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7조의2를 신설(2021. 9.)하였음.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 2025. 1.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기본계획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은 고등교육 재정의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확보할 것인지,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실제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²⁾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재정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최근 OECD 통계(「OECD 교육지표 2025」, 기준연도 2022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연간 약 21,444달러(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695

2)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 대학의 특성·역량에 따른 재정지원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연구·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달러에 불과(OECD 평균의 68.5%)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고등교육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는 재정지원 계획은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워 형식적·선언적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할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현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정책 조정 및 협의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계획 수립 시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과 재정당국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수립이 어렵고 선언적 조문이 될 가능성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